실무수습 학점인정 신청서

성 명		성 별	
생년월일		학 년	
학 번		휴대폰	

	년도	학기	수습기관	이수 시간	학점 신청
신청 대상 실무 수습					

※ 뒷면 정보 관련 규정 참조 및 제공 동의서 필히 작성 요함.

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
WONKWANG UNIVERSITY LAW SCHOOL

□ 방학중인턴쉽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규칙(제정 2011. 11. 25)

제1조(목적)

이 시행규칙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"법학전문대학원"이라 한다) 학칙 제22조의 2에 규정된 방학 중 인턴쉽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점인정 대상)

① 방학 중 인턴쉽 대상기관을 다음 각 호로 정한다.

1. 법원 2. 검찰 3. 헌법재판소 4. 기타 국가기관 5. 변호사사무실 등 사설기관

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5호 대상기관의 중복실습은 인정하지 않는다. 다만, 각 대상기관의 심화과정은 예외로 한다.

제3조(학점인정의 범위)

방학 중 인턴쉽은 40시간당 1학점을 기준으로 재학기간 중 최대 2학점까지 인정한다. 다만 실습과정 교과목의 실무수습 이수에 필요한 40시간은 학점인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학점인정 절차) ① 학칙 제22조의 2에 의한 방학 중 인턴쉽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 제1항의 대상기관이 발급한 이수확인증명서 및 본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관련 부가자료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는 방학 중 인턴쉽 대상기관과 인정학점을 심의한다.

③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소정의 학점을 부여한다.

□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1. **수집·이용 목적:**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학점인정 심의
2. **대상자료**
   가. 개인식별정보 중 성명, 생년월일, 이동전화번호, 주소
   나. 실무수습 이수현황, 이수결과, 평가서 등 실무수습 관련자료
3. **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**
 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실무수습 학점인정 결정일까지 이용합니다.
4. **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**
   귀하가 위 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셔야만 학점인정에 가능합니다.

본인은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함(　　)　　동의하지 않음 (　　)

2013년　　월　　일

신청자 :　　(서명)

법학전문대학원장 귀하